

풀무원 기업지배구조헌장

Pulmuone Corporate Governance Charter

前 文

풀무원은 내 가족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지속성을 실천하는 생활문화가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하스(LOHAS)기업을 목표로 한다.

풀무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 투명한 바른마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풀무원은 이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와 관리감독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글로벌로하스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1. 주 주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풀무원의 소유자로서 이익분배참여권, 주주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해산,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 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주에게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1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보장되나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로부터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3. 주주의 책임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그 지배권을 남용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대표이사의 임면 및 경영진의 감독, 평가, 보상정책 결정, 경영성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중요한 투자사업, 대규모 자금차입 등의 연간사업계획 승인 및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 구성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수를 정하되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3. 이사의 선임

이사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며 이사시차임기제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4.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하며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노력한다.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5.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연 6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녹음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며 회의록과 녹음자료는 유지, 보존한다.

6.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전략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이사회에 제출 한다.

7.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 경영의 주체로서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심의나 결의에 대한 책임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나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8. 평가 및 보상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되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그 산출기준 등은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은 사외이사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하고 관련사항을 공시한다.

III. 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한다.

2. 외부감사인

회사는 외부 감사인에게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외부 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

IV. 이해관계자

회사는 채권자 보호,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V. 공 시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공시한다.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및 중요 현안과제도 그 내용을 공시하며 공시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